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요구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기관 확대 등〉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7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불응시 과태료 부과 (안 제86조제2항 및 제105조의3)	3
2.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확대(안 제87조)	6
3.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기관 확대(안 제88조)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은석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4. 9. 10.

다.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함)에게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자료 수집·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

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계자료 수집·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제10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불응시 과태료 부과 (안 제86조제2항 및 제105조의3)

현 행	개정안
○ 통계자료 자료제출 의무화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 가능 - (신설)	○ 통계자료 자료제출 의무화 - (현행과 같음) - 자료제출요구에 따른 의무 부과
○ 자료제출 불응시 과태료 부과 - <신 설>	○ 자료제출 불응시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행법 제86조¹⁾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를 정부기관 등에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료 및 정보 요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임.

1) 「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받은 정부기관 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86조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05조의3)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국은행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까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둘째, 현행 「통계법」의 관련 규정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한국은행은 「통계법」 제15조²⁾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통계의 경우 동법 제25조³⁾에 따라 통계청장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 또

2)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는 단체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⁴⁾까지 두고 있어 보다 실효적으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음.

셋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⁵⁾ 행정기관 간의 협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통화신용정책을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구⁶⁾ 등 다른 이행강제 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통계법」 제41조(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5) 안 제105조의3(과태료) ①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6) 「한국은행법」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확대(안 제87조)

현 행	개정안
○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 금융기관 -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 <u>금산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 <u>(신설)</u>	○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 (현행과 같음) - <u>금산법상 금융기관</u> - <u>상호저축은행중앙회</u> - <u>농협협동조합과 그 중앙회</u> - <u>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u> - <u>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u> - <u>새마을금고 및 중앙회</u>

현행법 제87조⁷⁾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의 모든 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신용협동기구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관하여, 현행법 및 시행령⁸⁾, 금융통화위원

7) 「한국은행법」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2.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회 규정인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⁹⁾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와 더불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등의 기관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권별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와 더불어 현행법상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8)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2(자료제출요구 대상) ① 법 제8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산규모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자산규모(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각 금융업을 같은 금융업으로 보아 산출한 평균 자산규모를 말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5. 「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업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 ② 제1항에서 자산규모 및 평균 자산규모는 법 제87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9)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거래대상기관)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3. 법 제79조 단서에 따른 다음의 법인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한국거래소
 -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의 여신을 받는 영리기업
4. 법 제8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의 금융기관 중 외국 중앙은행과 CLS은행(CLS Bank International),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 정부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한국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기관

던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종합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등 비은행금융회사까지도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포함됨.

< 자료제출 대상기관 범위 >

한은법상 금융기관	한은당좌예금 거래 약정 체결자 ¹⁾	금산법상 금융기관 ²⁾		개정안
		현행	개정안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은행지주회사	1.정부대행기관 2.투자매매업자 3.투자중개업자 4.집합투자업자 5.한국예탁결제원 6.증권금융회사 7.종합금융회사 8.자금중개회사 9.한국거래소 10.보험회사 11.한국수출입은행 12.예금보험공사 13.상호저축은행 14.한국은행여신을 받는 영리기업 15.외국 중앙은행, CLS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16.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관	업권별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다음 기관 1.투자매매업자 2.투자중개업자 3.집합투자업자 4.보험회사 5.상호저축은행 6.여신전문금융업자	모든 1~6의 기관 7.중소기업은행 8.투자자문업자 9.투자일임업자 10.신탁업자 11.종합금융회사 12.금융지주회사	1.상호저축은행중앙회 2.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4.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주 : 1) 한은 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자의 경우 은행법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이미 ‘한은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삭제

2) 금산법상 금융기관과 한은 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자 간 중복되는 기관 유형이 있는데, 모든 한은 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 대상자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유형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금산법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더 넓음.

개정안에 따를 경우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잠재위험 분석이 보다 원활히 수행되고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이 확장됨으로써 보다 정밀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수행이 가능해지고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자료제출 대상기관이 중소 금융기관과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까지 확대되나, 이들 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고려가 필요함.

개정안의 내용은 ‘금융안정’이 목적으로 도입된 2011년 당시 동일하게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당시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자료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으나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간에 체결한 정보공유약정¹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10)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보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2012.9)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1. 기본 원칙

나. 각 기관은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 등의 금융 정보를 최대한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책수행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한다

한 법률」 상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고 있고, 2023년 10월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¹¹⁾를 체결하여 비은행금융회사 관련 정기보고서와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가능하고¹²⁾,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비은행권 자료제출 요구시 영세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도 한국은행이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약정(MOU)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전체 금융기관 관련 자료를 공유받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확대 시 여러 기관을 통한 중복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중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업무과중,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에 이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

1. 기본 원칙

나. 양 기관은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저축은행, 신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같다) 및 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정기 혹은 수시로 제출받고 있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의 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및 중앙회(이하 “비은행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한다.

12) 「한국은행법」 제94조(자료 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기관 확대(안 제88조)

현 행	개정안
○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기관 - 금융기관 - <u>(신설)</u>	○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기관 - (현행과 같음) - <u>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u> - <u>금산법상 금융기관</u> - <u>상호저축은행중앙회</u> - <u>농협협동조합과 그 중앙회</u> - <u>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u> - <u>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u> - <u>새마을금고 및 중앙회</u>

현행법 제88조¹³⁾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¹⁴⁾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대상기관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13) 「한국은행법」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4) 「한국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다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등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를 모두 포함하게 됨.

<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기관 범위 >

현행	개정안		
	한은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자 ¹⁾	금산법상 금융기관 ²⁾	신용협동기구 등
1.은행법에 다른 은행 2.은행지주회사	1.정부대행기관 2.투자매매업자 3.투자중개업자 4.집합투자업자 5.한국예탁결제원 6.증권금융회사 7.종합금융회사 8.자금중개회사 9.한국거래소 10.보험회사 11.한국수출입은행 12.예금보험공사 13.상호저축은행 14.한국은행여신을 받는 영리기업 15.외국 중앙은행, CLS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16.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관	1.투자매매업자 2.투자중개업자 3.집합투자업자 4.보험회사 5.상호저축은행 6.여신전문금융업자 7.중소기업은행 8.투자자문업자 9.투자일임업자 10.신탁업자 11.종합금융회사 12.금융지주회사	1.상호저축은행중앙회 2.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4.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주 : 1) 한은 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자의 경우 은행법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이미 '한은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삭제

2) 금산법상 금융기관과 한은 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자 간 중복되는 기관 유형이 있는데, 모든 한은 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 대상자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유형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금산법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더 넓음.

2020년 이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¹⁵⁾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해 총 26회의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음.

[2020-2024년 검사 및 공동검사 실시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
은행	2	6	5	5	3
비은행	1	1	1	1	1
합계	3	7	6	6	4

자료: 한국은행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영업행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자금지원 필요성 등으로 금융기관 등의 경영상황이나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금융시장분석이 가능해지고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③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제도, 금융기관 인·허가 및 감독정책 등을 소관하고 있으며,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검사·감독기능을 소관하고 있음.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현행 한은법상의 금융기관(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외에 예금취급 비은행금융회사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바, 한국은행의 감독기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¹⁶⁾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게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등은 한은법상의 금융기관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업자¹⁷⁾와 「전자금융거래법」¹⁸⁾상의

16)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검사 및 공동검사 대상기관) 금융감독원에게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
2. 금융투자업자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발행자,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전자채권관리기관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화폐발행자,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하고 있고, 동법 제41조¹⁹⁾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²⁰⁾에 대하여 검사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금산법상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기

-
-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5. 28.>
 -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31., 2016. 5. 29.>
 -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8)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0) 2024년 8월말 기준, 카카오, 지마켓, 티머니 등 196개 전자금융업자가 등록되어 있음

구 등에도 자료제출 요구 및 금융감독원을 통한 공동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한은이 추가적인 비은행권 자료제출 요구권 및 공동검사 요구권 등을 확대하는 경우, 보고체계 별도 구축 및 업무 중복 등으로 영세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금융감독과 통화정책을 분리하는 現 금융감독체계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요구 대상기관 확대 시 여러 기관을 통한 중복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중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업무과중,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은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검사요구권 확대 등은 자료작성 부담, 수검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생략)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와 정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 ----- -----금융기관
<신 설>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현행	개정안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u>금융기관에</u>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 ----- ----- ----- -----제87조 각 <u>호의 자에</u> ----- ----- -----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의3(과태료) ①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이 부과·징수한다.

문 의 처
02)6788-5148